

이사회 규정

2021. 5. 24



2006. 08. 01 제정

2016. 02. 16 개정

2018. 02. 07 개정

2021. 05. 24 개정

전 문

이사회는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SK 머티리얼즈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생존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진화·발전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회사의 정관 전문에 반영된 경영철학을 다음과 같이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아 실천한다.

[경영기본이념의 실행]

이사회는 회사 경영철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천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이사회는 회사 경영철학을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SK 고유의 기업문화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

이사회는 SK Brand의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Brand 보유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한다.

이사회는 SK Brand의 가치와 기업문화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SK Brand와 기업문화를 함께 사용하는 타회사들과 상호 협력방안을 수립, 실행하도록 한다.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 ② 회사는 이사회 내에 산하 위원회(이하 "산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전항 산하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하 위원회 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른다.
- ④ 이사회에 이사회와 산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업무의 주무부서장으로 한다.

제3조 [의장]

-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임하며, 이사회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 ②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직무를 대행할 이사를 정한다.

제 2 장 이사회 소집

제4조 [회의장소 등]

- ① 이사회는 회사 본점 또는 이사회 소집권자가 지정하는 기타 장소에서 개최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산하 위원회도 이와 같다.

제5조 [소집]

- ① 정기 이사회는 월 1 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이사회 의장은 필요 또는 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 [소집통지]

- ① 이사회 소집통지는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 의장이 지명한 이사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간사가 회의일자, 장소, 목적사항을 이사회 심의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와 함께, 회의일 7 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회의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소집통지는 각 이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본 조 제 1 항의 목적사항에 관하여서만 의결을 할 수 있다.
- 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서면 동의가 있을 때에는 본 조 제 1 항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최될 수 있다.

제7조 [의안 제출]

- ① 이사회 의안과 그 제안 이유(이 규정 제 6 조 제 1 항에 규정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포함한다)는 각 이사가 작성하여, 적어도 이사회 회의일 10 일 전까지 이사회 간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는 이사회 간사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② 간사는 전항의 의안을 접수하면 법적 사항 및 문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를 이사회에 부의한다.

제 3 장 이사회 결의사항

제8조 [주주총회, 이사회 및 기타 경영지배구조 관련 사항]

- ① 주주총회의 소집 및 부의 안건 채택
 - ②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지정
 - ③ 주주제안에 대한 심의 및 주주총회 부의 여부에 대한 결정
 - ④ 대표이사, 각자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의 선임
 - ⑤ 대표이사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이사회, 주주총회를 주재할 이사의 순위 결정
 - ⑥ 이사회 의 연기 및 속행의 결의
 - ⑦ 산하 위원회의 구성,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각 산하 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
 - ⑧ 필요 시 각 산하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 결의
-

- ⑨ 사외이사 제도에 관한 사항
- ⑩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 ⑪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 ⑫ 주주대표소송에 있어서 소송참가
- ⑬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 ⑭ 정관의 변경
- ⑮ 이사회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 ⑯ <삭 제>
- ⑰ 이 규정 전문에서 정한 경영기본이념의 실행을 위한 회사 경영관리체계의 정립 및 수정
- ⑱ 기업지배구조현장의 제·개정

제9조 [투자 및 기획관리 사항]

- ① 당사가 발행주식 총 수의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의 설립, 합병, 분할, 해산, 주권상장 및 코스닥상장
 - ②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이상의 타 법인에 대한 출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
 - ③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이상의 자산의 취득
 - ④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이상의 신규 시설 투자, 시설 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
 - ⑤ 회사의 합병/분할 등에 관한 사항
 - ⑥ 회사의 해산 및 회사의 계속
 - ⑦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
단, 다음 각 목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1. 양수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 회사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이상인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
 - 2. 양수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 회사 매출액의 100 분의 10 이상인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
 - 3.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 회사 부채총액의 100 분의 10 이상인 영
-

업의 양수

4. 영업전부의 양수

5.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기로 하는 계약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제10조 [회계 및 재무관리 사항]

- ①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 및 영업보고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의 승인
- ② 중간배당, 주식배당
- ③ 준비금의 자본전입
- ④ 신주의 발행
- ⑤ 정관에 따른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신주 발행에 관한 사항
- ⑥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 ⑦ 자본 감소
- ⑧ 주식의 액면분할 및 병합
- ⑨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 등의 체결 및 해지
- ⑩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 ⑪ 사채의 발행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음)
- ⑫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등 특수사채의 발행사항 결정
- ⑬ 1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 또는 기부. 단, 태풍, 홍수, 화재,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 구호 제공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기부는 선 집행 후 사후 보고할 수 있다.
- ⑭ 회사 주요자산의 담보제공 또는 처분. 단, 회사 주요자산이라 함은 장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자기 자본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는 자산을 말한다.
- ⑮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국내외 차입계약(1년 이내의 단기차입 제외) 및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 ⑯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채무면제 또는 인수

- ⑰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 금전의 가지급 및 금전·증권의 대여
- ⑱ 이익배당한도 내의 주식소각
- ⑲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

제11조 [인력 및 조직관리 사항]

-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부여의 취소
- ② 상법 제 398 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의 이사회 승인
- ③ 이사의 경업거래의 승인 및 승인 없는 경업거래에 대한 개입권 행사
- ④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의 이사회 승인
- ⑤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기타 임원의 책임부담에 대한 구제 제도의 도입
- ⑥ 이사 해임안 제출
- ⑦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 ⑧ 상법 제 542 조의 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따른 준법지원인의 임면, 준법통제기준의 제정 및 변경
- ⑨ 임원관리규정의 제·개정

제12조 [기타 주요 경영사항]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1 조의 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 ② 상법 제 542 조의 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이사회의 승인사항으로 정한 사항
-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 14 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에 따른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사회 승인
- ④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특별히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제13조 [결의사항의 위임 및 보고사항]

- ①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장에 명시된 이사회 결의사항 중 일부를 산하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본 장에 명시되지 않은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임되고 부여된 권한 하에서 이를 결정·집행한다.
-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1. 이사회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의 달성, 시행 및 집행
 - 2. 이사회에 의결을 요하는 사항 이외의 제반 사항 결정 및 집행
 - 3.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계약 체결을 위한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하며, 회사를 대표하여 약정을 하는 행위
 - 4. 임직원에게 대한 순차적인 권한의 재 위임
 - 5. 하기 사항에 관한 이사회 보고
 - 가. 연간 경영계획
 - 나. 분기 경영실적
 - 다. 정기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
 - 라.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을 위임한 경우 그 집행결과
 - 마. ESG 정책의 수립 및 이행
 - 바. 기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④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이사회 및 감사에게 연 1 회 보고하고,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연 1 회 보고한다.
- ⑤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실적 및 계획을 이사회에 연 1 회 이상 보고할 수 있다..
- ⑥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연 1 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이사회 심의 의결

제14조 [관계인의 출석]

- ① 이사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임직원, 외부인사 등을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이사 및 감사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임직원에게 안건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이사 및 감사는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 [의결의 채택]

- ① 이사회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사 전원의 과반수를 회의 정족수로 한다.
- ② 이사회에서 채택되는 모든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다만, 이사회규정 제 11 조제 2 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및 제 11 조 제 4 호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제16조 [의사록 등]

- ① 이사회 및 각 산하 위원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의사 경과 요령과 채택된 결과 및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 이유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를 주재한 의장과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이사 및 위원이 이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② 간사는 필요한 경우 전항의 의사록의 부분을 작성하여 즉시 의안을 제출한 임원 또는 업무상 관계 있는 임원에게 송부한다.
- ③ 이사회 부의 안건과 의사록은 이사회 간사가 이를 보존한다.

제 5 장 이사

제17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 및 정관에 의거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전항과 관련하여 회사 내 담당 임직원이 작성 또는 제출한 품의서, 통보서, 보고서 및 각종
-

회계자료 등과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외부의 관련 전문가들이 제출한 보고서 등 그리고 회사 내 산하 위원회의 의견 등을 신뢰하고 이에 의존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③ 이사는 이사회 의사결정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 3 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이사가 이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 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 이사회는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 3 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익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이사는 이사회 의사결정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하며,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경우, 이사회는 당해 이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의 직을 사임토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이사는 이사회 의사결정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 3 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
- ⑥ 이사는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최선의 주의로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된다.
- ⑦ 이사는 업무와의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의 명예나 위신을 실추시키지 않도록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⑧ 이사가 본 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당해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⑨ 이사는 이사회 의사결정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또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 장 감사

제18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관한 적법성 감사
-

2. 회사의 재무활동의 건정성과 타당성 감사
3.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4.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5. 외부감사인의 선임/변경/해임 및 감사활동 평가
6. 외부감사인의 非감사용역에 대한 사전 승인
7. 외부감사인의 회사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조사 보고 수령 및 대표이사에 시정조치 요구
8. 기타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 수행

부 칙(2016.0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16 년 2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2.0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18 년 2 월 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5.2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21 년 5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